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2년 11월 19일

○ 회부일자 : 2002년 11월 20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현지성 사무를 현실에 맞게 시·군에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사회복지과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노인복지 시설의 감독 등 사무가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변경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환 경 과 】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당초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 시·군에 재위임 했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변경되어,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함.
- 소음진동규제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사무 등 일부 위임사무를 개정 법령에 맞게 변경함.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위임조항을 개정법령과 같이 변경함.

【 물관리과 】

-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함.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사회복지과의 묘지 등 장사관련업무와 노인복지시설 감독 업무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장·군수 권한사항으로 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환경과의 대기환경 관련업무는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하였던 사항을 동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소음진동규제 관련업무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삭제하고, 위임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물관리과의 수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의 설치이행 명령 등의 업무를 신규로 시·군에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회복지과 소관 일련번호 제14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의 위임조항을
삭제하려는 사유와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3호(개정 제20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규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로서
도내에 지정·고시된 지역이 없는데도 시·군에 위임하려는
사유,

환경과 소관 일련번호 제5호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오염물질 채취, 검사의뢰 권한은 위임하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의 개선명령을 위임하지
않는 사유,

소음·진동규제법은 1999. 2. 8일 법률 제5862호로 개정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은 1999. 12. 31일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어,
관련법률의 개정된 지 한참이 지난 지금에 와서 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 임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